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10.
발의자 : 서일준 · 강대식 · 김학용
박정하 · 김정재 · 지성호
김용판 · 이주환 · 양금희
허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 · 저소음 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(버티포트)를 활용하여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.

도심항공교통의 도입 · 확산과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· 지원을 담은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에서는 버티포트로 지정 ·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9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17	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	사용료등의 감면	2029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